

[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]

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발행 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(이하 ‘본건 사채’)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구분	
사채	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
발행회사	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
사채관리회사	주식회사 상상인증권

◀ 아 래 ▶

1. 일 시

2025 년 2 월 7 일 (금요일) 10:00 (오전 10 시)

2. 장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,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의실 101 호

3. 참석대상

본건 사채의 사채권자

4. 소집이유

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5 항의 안건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결의를 위함

5. 안건(회의 목적사항)

제 1 호 의안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)

2023 년 3 월 17 일 발행 제 3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 3 조의 사채조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1) 만기의 변경(연장)

만기를 2027 년 9 월 17 일로 변경한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만기	2026 년 3 월 17 일	2027 년 9 월 17 일

2)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

가)표면이율을 연 3.0%로, 만기보장수익률을 3 개월 복리 연 6.0%로 각 변경하되, 2025년 3 월 17 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변경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며, 그 전에 이미 계산 또는 지급한 몫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나)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2025년 3 월 17 일 이자지급기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인가결정(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불복절차 종결 후) 후 7 영업일 내로 가)항의 변경된 이율에 따라 계산된 2025년 3 월 17 일 몫의 표면이자 및 이에 대하여 2025. 3. 17.부터 위 표면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 연 3%로 계산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.

다)나)항에 따른 지급이 이뤄진 겨우 발행회사는 2025년 3 월 17 일 몫의 표면이자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책임(연체이자 지급의무,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등)을 면한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표면이율	연 2.0%	연 3.0%	2025년 3 월 17 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적용
만기보장수익율	연 5.0%	연 6.0%	상동

3) 만기상환금액(만기상환율)의 변경

위 1)항 및 2)항의 변경된 만기, 표면이율,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만기상환금액(만기상환율)을 전자등록금액의 115.3184%로 변경한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만기상환금액	전자등록금액의 109.6452%	전자등록금액의 115.3184%

4) 조기상환청구권 삭제(소멸)

3 차부터 6 차까지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(청구기간, 조기상환일, 조기상환율)을 삭제(소멸)한다.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위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. 즉 동일하게 처음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며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(사유) 역시 불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.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한다.

구분	조기상환청구기간		조기상환일	조기상환률 (전자등록금액 기준)	변경내용
	FROM	TO			
3 차	2025-1-16	2025-2-17	2025-3-17	106.2691%	삭제(소멸)
4 차	2025-4-18	2025-5-19	2025-6-17	107.0975%	삭제(소멸)

5 차	2025-7-19	2025-8-18	2025-9-17	107.9362%	삭제(소멸)
6 차	2025-10-18	2025-11-17	2025-12-17	108.7854%	삭제(소멸)

6. 소집자

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(본건 사채의 발행회사 지위)

7. 참고사항

1)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직접행사의 경우 :

-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- ② 신분증(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)
- ③ 인감(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) 또는 인감 날인된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
- ④ 인감증명서(집회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본,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(의사록 공증용)

- 대리행사의 경우

-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- ②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
- ③ 인감 날인된 공증 위임장(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)
- ④ 위임인 인감증명서 2 부(집행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본,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(위임장 1 부는 위임 여부 확인용, 나머지 1 부는 의사록 공증용)
- ⑤ 대리인 신분증

2) 사채권자는 집회 1 주간 전인 2025 년 01 년 30 일까지 상법 제 492 조 제 2 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3)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단, 상법 제 498 조 제 1 항 단서에

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
- 4)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
- 5)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‘전자등록증명서 공탁절차’ 및 ‘서면 의결권 행사’, ‘위임장 양식’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 상단에 첨부된 ‘사채권자 집회 관련 안내문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6)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유니온제약(주) 경영기획실(담당자 조해선, Tel. 02-489-361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)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 1 월 8 일

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병하 (인)